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-308호

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를 위한 공람공고

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01-1번지 “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” 조합설립(경미한) 변경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8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- 공람기간 : 2026. 3. 18.(수) ~ 2026. 4. 1.(수)
- 공람장소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 [☎ 051-610-4664]
[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, 3층]
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사무실 [☎ 051-626-4492]
[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64번길 22]
- 공람내용 : 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(안)
 -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
 -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3,958.3㎡
 -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2027. 12. / 2030. 3.
 -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: 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
(수영구 수영로 464번길 22)
- 공람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- 의견제출처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

산정수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
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(안) 공람 의견서

의견 제출자	성명		연락처	
	주소			

◇ 제출의견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
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
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6. . .

의견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